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75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9월 6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고, 일부 입법기술적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내용과 의결 주문이 일치하도록 함(안 제2조제3호, 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
수요를 고려한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, 자립 등의 지원 사업
을 말한다.

안 제10조의 제목을 “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신 · 구 조문대비표 〉

전 부 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><u>제10조 ①</u>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,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3. <u>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,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</u>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,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"학교 밖 청소년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"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,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,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,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업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
6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시장은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

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」 제6조의2에 의한 “분과위원회”에서 대신한다.

제6조(상담지원)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학업지원)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
2.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상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
3.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
4.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
5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직업체험 및 취업지원)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

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
3. 직업소개 및 관리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자립지원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, 문화공간지원, 의료지원,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경제교육, 법률교육,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,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
3.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
4. 각급학교
5.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
6. 지방노동청 및 시청
7.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
8. 청소년비행예방센터
9. 보호관찰소

10.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

제11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·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지원센터의 위탁)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지원센터의 지도·점검)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·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) ① 시장은 각 자치구에 설치된 지원센터(이하 "자치구 지원센터"라 한다)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공공시설 이용권)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